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산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5. 12.



# 경 상 북 도

## 통 보·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에서는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 1. 승진임용배수범위 밖의 자를 근속승진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5조에 따르면 해당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8급에서 7년이상 재직한 대상자를 근속승진임용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승진임용 배수범위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정직과 강등에 해당하는 18개월에서 6개월 가산하여 27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될 수 없고 강등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해당계급에서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재직 한 대상자를 근속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징계처분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승진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있는 자를 근속승진임용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7급이하 근속승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8→7급 근속승진 대상인원 3명중 \*\*8급 \$\$\$의 경우 ☆☆☆☆. ☆. ☆.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을 받아 사유 발생일로부터 ☆☆☆☆. ☆. ☆.까지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되어 근속승진 대상인원에 포함시킬 수 없었음에도 당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2명에 대한 승진임용배수범위(5배)를 적용하지 않고 \*\*8급 \$\$\$을 포함한 3명에 해당하는 승진임용배수범위(4배)를 적용하여 승진후보자명부 12번인 \$\$\$을 근속승진임용 되도록 하였다.

**[표 1] 승진임용배수범위 밖의 자, 근속승진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승진임용배수 범위가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승진임용배수범위 밖의 자가 7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2.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 또는 지방 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과 관련된 사유로 경징계 및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명예퇴직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징계처분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과 관련된 사유로 경징계 및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받은사실이 없고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결을 통해 특별승진임용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 및 ☆☆☆☆. ☆☆. ☆☆. 개최한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대상자 지방\*\*서기관 \$\$\$, 지방서기관 \$\$\$의 경우 명예퇴직이 가능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자격요건(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특별승진임용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가 특별승진 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2]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가 4급에서 3급으로 특별승진임용 되었다.

### 3.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 등 부적정

####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실시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전 실무수습을 실시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달리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없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임용전 실무수습을 실시하였다.

[표 3]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실시 현황 “생략”

####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 기간이 지난 자를 신규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에 따른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 안전번호 16-1310)」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며, 경력경쟁 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 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 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2조 내지 제28조에 따르면 실무수습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시하되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로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로 하고 실무수습의 경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우수 인재 추천 채용에 따른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 등과 달리 해당분야 자격증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된 자의 경우에는 합격 후 1년이 지나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신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효력기간내에 임용관련 절차를 완료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년도 제☆☆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분야(\*\*\*\*\*) 자격증 보유로 응시하여 ☆☆☆☆. ☆. ☆☆. 최종합격한 \*\*\*\*서기 \$\$\$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없었음에도 곧바로 임용하지 않고 ☆☆☆☆. ☆. ☆☆. ~ ☆☆☆☆. ☆ ☆☆.까지 합격으로부터 1년이 지난 기간까지 임용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이 지난 시점인 ☆☆☆☆. ☆. ☆. 임용전 실무수습 해제 후 지방\*\*\*\*서기보로 임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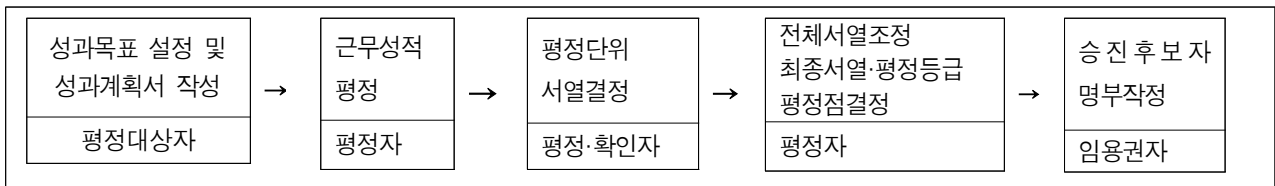
[표 4]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 기간이 지난 자 신규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관련지침에 맞지 않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 수습이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의 효력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4.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경산시에서는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5]와 같은 절차에 따라 매시기별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5] 지방공무원 평정절차 (☆☆☆☆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은 채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안)을 작성할 때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대조확인하여 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업무를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 등이 발생하여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조정 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6]과 같이 ☆☆☆☆년 하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심의(안)을 작성하면서 나국에서 제출한 \*\*8급 서열명부에는 \$\$\$ (1위), \$\$\$ (2위), \$\$\$ (3위), \$\$\$ (4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최종 서열명부에는 \$\$\$ (30위), \$\$\$ (25위), \$\$\$ (26위), \$\$\$ (27위) 순으로 변경한 후 ☆☆☆☆.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년 상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는 [표 7]과 같이 \*\*9급의 전체서열이 \$\$\$ (36위), \$\$\$ (37위), \$\$\$ (38위), \$\$\$ (39위) 순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인사행정시스템에는 \$\$\$ (39위), \$\$\$ (36위), \$\$\$ (37위), \$\$\$ (38위)로 입력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 등의 절차없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 6]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한 채 근무성적평정 확정 내역 “생략”

[표 7]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다르게 인사랑 입력 내역 “생략”

그 결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가 유지되지 아니한 채 근무성적평정점이 심사·결정되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인사행정시스템에 반영되었다.

## 5. \*\*직렬(7급·8급·9급) 정원관리 부적정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및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소속 \*\*직렬 공무원의 경우 5급 최대 1명(\*\*+\*\*:1명), 6급 최대 4명(\*\*+\*\*:4명), 7급 2명(\*\*:2명), 8급 4명(\*\*:4명), 9급 1명(\*\*: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서관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식정보 및 창조기간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소속 기관의 정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되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8]과 같이 단수로 책정된 \*\*직렬 정·현원과

관련하여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그에 따른 복직에 따라 \*\*7급의 경우 ☆☆☆☆. ☆. ☆. 이후 현원(3명)이 정원(2명)을 초과, \*\*8급의 경우 ☆☆☆☆. ☆. ☆☆. 이후 현원(5명)이 정원(4명)을 초과, \*\*9급의 경우 ☆☆☆☆. ☆. ☆☆. 이후 현원(2명)이 정원(1명)을 초과되어 정원조례 및 규칙에 맞지 않게 조직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년 상반기 정기인사(인사위원회 : ☆☆☆☆. ☆☆. ☆☆.)시 ☆☆☆☆. ☆. ☆. 다 관장 \*\*5급 \$\$\$의 퇴직준비교육 따른 결원보충(\*\*+\*\*) 및 ☆☆☆☆년 하반기 정기인사(인사위원회 : ☆☆☆☆. ☆. ☆☆)시 라 팀 신설 (☆☆☆☆. ☆. ☆)에 따른 인사요인(\*\*+\*\*)을 \*\*직렬로 충원하지 않고 \*\*직렬로 책정하여 \*\*직렬이 계속적으로 정원초과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그와 반대로 \*\*직렬에 대한 정원조례 및 규칙 또한 개정하지 않았다.

**[표 8] \*\*직렬(7·8·9급) 정원초과 현황 “생략”**

그 결과, 정원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직렬(7급·8급·9급) 정원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 및 \*\*직렬 정원초과 운영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④ 관련자 BBB(병합), CCC, DDD, EEE, FFF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1.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II.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 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관리 및 적정 조치를 하지 않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 하였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를 승진임용 하였다.

**[표 1]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 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6급→5급 \$\$\$ 등 6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 되었다.

**2.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5급 교육이수실적에 미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의 ‘II.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적용하고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에서는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을 입력하되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인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교육 이수 실적은 승진 직급인 5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한 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승진임용 등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4급 승진에 따른 승진심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대상자들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이수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이수시간을 산정하여 실제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5급 \$\$\$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체크 후 인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표 2] 4급 승진임용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현황 “생략”**

그 결과, \*\*5급 1명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충족으로 표현되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1.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자의 임대 등에 대한 취득세 징수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취득가액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 외 7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20,210,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1] 생애최초 주택 감면대상자 임대 추징대상 명세 “생략”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의 미사용 등에 대한 취득세 징수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창업일 당시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 \$\$\$\$\$\$가 창업중소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14,809,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자 매각·임대 등 추징대상 명세 “생략”

### 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6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지분별 변동 내역 등 과세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과점주주가 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주식회사 \$\$\$\$ 외 8개 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한 \$\$\$ 외 17명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취득세 27,780,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표 3]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그 결과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징수되어야 할 취득세 총 18건, 62,800,720원이 세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과·징수가 누락된 취득세 62,800,720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1] 생애최초 주택 감면대상자 임대 추정대상 명세 “생략”**

**[붙임 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생략”**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감리용역 계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체결하였다.

### [표 1] ☁☁☁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감리용역 계약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용역의 경우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방법<sup>1)</sup>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무비율 평가는 관렵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렵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관렵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1)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제2장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추정가격<sup>2)</sup>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재무비율 평가는 관련협회 조사·통보 자료,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등”)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보완·추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

2)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감리용역’의 추정가격은 232,175천 원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7순위 입찰자인 (주)\$\$\$\$\$\$\$\$의 재무비율 평가를 하면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sup>3)</sup>로 아래 [표 2]와 같이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종합평점 95.5점으로 적격 판정하였다.

**[표 2] 경영상태 평가 내역 “생략”**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주)\$\$\$\$\$\$\$\$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재무비율 평가를 최저등급으로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3.4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 (주)\$\$\$\$\$\$\$\$와 ☆☆☆☆. ☆. ☆☆.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 순위 입찰자들은 적격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 3] 적격심사(재심사) 결과 “생략”**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재무제표확인 서류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것이며,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음.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년 ☞☞☞☞☞☞ ☞☞☞☞☞☞☞☞ ☞☞☞☞☞☞☞☞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와 ☆☆☆☆. ☆. ☆. 체결하였다.

[표 1] ☆☆☆☆년도 ☞☞☞☞☞☞ ☞☞☞☞☞☞☞☞ ☞☞☞☞☞☞☞☞ 유지보수 용역 계약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59호, 2020. 11. 30,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되,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르면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용역은 적격통과점수(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 1.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세부기준 제7조 및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년 ♣♣♣♣♣♣ ♣♣♣♣♣♣♣♣ ♣♣♣♣♣♣♣♣ 유지보수 용역 적격심사 시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 요구 없이 경영상태 평점 9점을 부여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총점 88.14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내역 “생략”

## 2. 신인도 가점 인정 부적정

세부기준 제7조 및 [별표 6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신인도 심사항목 중 고용창출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 1~3점<sup>4)</sup>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점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년 ♣♣♣♣♣♣ ♣♣♣♣♣♣♣ ♣♣♣♣♣♣♣ 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고용창출의 평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세부기준에서 정한 점수를 부여하여야 했다.

4) 신인도 평가기준 - 다. 고용창출 신규 - 신규고용촉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증가율	평점	증가율	평점	증가율	평점
6% 이상	3	7% 이상	3	10% 이상	3
5% 이상	2	6% 이상	2	8% 이상	2
4% 이상	1	4% 이상	1	4% 이상	1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6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신규채용 이행 협약서”<sup>5)</sup>를 제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신인도 1.5점을 부여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총점 88.14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에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고용사실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고용사실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경영상태와 신인도 심사항목 중 고용창출의 평점을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85.64점으로 적격통과점수 (88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 ☆. ☆.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 순위 입찰자들은 적격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표 3] 적격심사(재심사) 결과 “생략”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5)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488호, 2016. 6. 2)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의 경우 당해사업 관련 월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 채용 시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별지 5호 (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직화/장애인 신규직원) 채용 협약서가 있었으나, 2018. 12. 13자로 개정된 경상북도 예규 1568호에서 해당 평가기준 및 협약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년부터 현재까지 ‘❄️❄️❄️ 위탁운영’ 및 ‘❄️❄️❄️ 마케팅·홍보’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기업인 (주)\$\$\$\$\$\$와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 [표 1] 경산물 운영 계약 현황 “생략”

####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누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총 사업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산시 나과에서는 매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문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경산물 유지보수 등 소프트웨어사업이 포함된 ‘☞☞☞ 위탁운영’ 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산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소화 과업 심의를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 위탁운영’ 사업에 대해 경산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간소화 과업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과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 2. 사무관리비 편성·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식비, 일반·관리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301-14)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했다.

한편 ‘㉹㉹㉹ 마케팅·홍보’ 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정산서 등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명절 등 이벤트 기간 중 할인금액 지원, 신규가입·구매후기 쿠폰 지급 등 해당 ㉹㉹㉹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마케팅·홍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 성격의 사업비 136,210천 원<sup>6)</sup>을 기타보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주)\$\$\$\$\$에게 사전 집행하였고, (주)\$\$\$\$\$는 할인금액 등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된 사업비를 위 부서에 정산 보고하는 등 지방 재정법에 따라 편성·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표 2] ‘㉹㉹㉹ 마케팅·홍보’ 사업비 집행 현황 “생략”

### 3.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다만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1장

6) 2023년 ㉹㉹㉹ 마케팅홍보 사업비 48,000천 원 중 광고비 11,790천 원을 제외한 사업비 36,210천 원 및 2024년, 2025년 ㉹㉹㉹ 마케팅홍보 사업비 각 50,000천원 합계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5장 제3절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따르면 시행령 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단일 용역사업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대상자로 결정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위탁운영’ 및 ‘○○○○ 마케팅·홍보’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sup>7)</sup>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및 정산서의 내용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의 내용이 동일한 사업<sup>8)</sup>인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였다.

그 결과 통합 발주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 32,400천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도 아래 [표 3]과 같이 1인

7) 예산서 상 사무관리비 편성목으로 경산시 농특산물 ○○○○ 운영 1식(2023년 : 70,000천원 / 2024년 : 100,000천원 / 2025년 : 100,000천원)으로 편성

8) ○○○○ 위탁운영 사업비의 경우 마케팅홍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 마케팅홍보 사업비의 경우 할인금액 지원 등 실제 투입되는 재원만 포함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발주로 인하여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표 3] 통합발주 시 예산절감 현황 “생략”

#### 4. 선금 지급 업무 소홀

예규 제1장 제2절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다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100%)<sup>9)</sup>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제출의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위탁운영’ 및 ‘☞☞☞ 마케팅·홍보’ 사업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를 통해 선금지급율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했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선금 지급의 권한이 있는 계약담당자를 통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선금을 지급하면서 (주)\$\$\$\$\$는 보증서 제출의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으며, ☆☆☆☆년도의 경우 예규 개정 전임에 따라 선금지급율이 최대 80%임에도 사업비 전액(100%)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9) 2024. 2. 15. 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 개정 이전의 경우 최대 8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표 4] 선금 지급 현황 “생략”

그 결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처분명령 유예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면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과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를 원상회복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읍·면·동행정복지 센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실사를 담당하고 있다.

### 1. 처분의무 미이행 농지의 처분명령 유예 부적정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처분의무통지된 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기간인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64명의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 ☆. ☆☆.부터 ☆☆☆☆. ☆. ☆☆.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 ☆. ☆☆. 처분의무 통지하였고, 다음 해인 ☆☆☆☆. ☆. ☆☆. 위 64명의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 유예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조사’ 공문(가과-\*\*\*\*)을 다음을 비롯한 8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시달하고,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의무이행여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농지 소유자 47명에게 ☆☆☆☆. ☆. ☆☆. 3년간(☆☆☆☆. ☆. ☆☆.부터 ☆☆☆☆. ☆. ☆☆.까지) 농지처분명령 유예 통지(가과-\*\*\*\*)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처분명령 유예 통지한 농지 중 ㉠면 ㉠리 \*\*\*-\*번지(934㎡)는 소유자인 \$\$\$가 연접한 부지(㉠면 ㉠리 \*\*\*-\*번지)에 소재한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sup>10)</sup>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년 이전, 날짜 미상)한 상태이고, ㉠면 ㉠리 \*\*\*-\*번지(507㎡)는 소유자인 \$\$\$가 연접한 부지(㉠면 ㉠리 \*\*\*번지)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sup>11)</sup>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년 이전,

10) \$\$\$가 ☆☆☆☆. ☆☆. ☆☆.축조한 3층, 연면적 521.47㎡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다중주택

11) \$\$\$가 ☆☆☆☆. ☆☆. ☆☆. 축조한 단층, 연면적 98.61㎡ 규모의 일반목구조의 휴게음식점

날짜 미상)되고 있어 각각 정상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농환경, 농지의 특성, 공간플랫폼 지적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 ☆. ☆☆. “자경”으로 보고한 ‘처분의무통지 농지 조사결과 제출’ 공문(나면-\*\*\*\*)만을 토대로 3년간 (☆☆☆☆. ☆. ☆☆.부터 ☆☆☆☆. ☆. ☆☆.까지)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하였다.

### [표] 처분명령 유예 농지 위성사진 비교 “생략”

## 2. 불법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조치 미이행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 행위를 한 자 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읍읍면 읍리 \*\*\*-\*번지 농지 소유자에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하도록 통지하면서, ☆☆☆☆. ☆☆. ☆☆. 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진이 첨부된 ‘처분대상농지조사’가 공문(나면-\*\*\*\*\*)으로 제출되었는데도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 3.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소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작물의 경작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정한 영농의사없이 부실하게 경작하는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는 자료, 관계인 증언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영농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정한 영농의사없이 부실하게 경작하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그 결과를 농지처분을 담당하는 가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가과에서 ☆☆☆☆. ☆. ☆☆. 시달한 ‘농지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 유예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조사’ 공문(가과-\*\*\*\*)에 따라 ☆☆☆☆. ☆. ☆☆.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이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하게 경작하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된 ☞☞면 ☞☞리 \*\*\*-\*번지와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면 ☞☞리 \*\*\*-\*번지에 대하여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재배작물 등 실제 경작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 ☆. ☆☆.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가과로 조사결과를 제출(나면-\*\*\*\*)하여 ☞☞면 ☞☞리 \*\*\*-\*, \*\*\*-\*번지의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면 ☞☞리 \*\*\*-\*번지는 (주)\$\$\$\$이 ☆☆☆☆. ☆.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 목적으로 마과로부터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 ☆. ☆☆. 건축신고한 뒤 농지전용 목적으로 나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장기간 건축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 ☆. ☆☆.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면 ㉠리 \*\*\*-\*번지는 ☆☆☆☆. ☆. ☆☆.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 처분의무가 소멸되었으나, 지목이 농지임에도 ☆☆☆☆. ☆. ☆☆. 감사일 현재까지 연결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경산시 농지관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면 ㉠리 \*\*\*-\*, \*\*\*-\*번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고,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 관리 위탁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경산㉯㉯㉯㉯㉯㉯내 ㉯㉯㉯㉯에 대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 제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경산시 \$\$\$ 협회에 관리위탁 하고 있다.

### [표 1] 경산㉯㉯㉯㉯㉯㉯ ㉯㉯㉯㉯ 관리위탁 현황 “생략”

#### 1. 원가 계산을 반영한 관리위탁 계획 미수립 및 수익금 방만 집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산시와 경산시\$\$\$협회가 체결한 「경산○○○○○○○○ ○○○○○ 운영관리 약정서」 제5조에 따르면 관리 경비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제4항<sup>12)</sup>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 수입 등 발생 수입과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지출 경비에 대해 원가계산하여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산시\$\$\$협회에서는 약정서에 따라 ○○○○○○내 ○○○○○○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그 사용료 등을 아래 [표 2]와 같이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표 2] ○○○○○○ 사용료 관리비용 사용현황 “생략”**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관리위탁을 할 때에는 ○○○○○○에서 발생하는 이용료 수입과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의 경상경비, 공과금 등 지출 경비에 대해 원가계산한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수탁자가 수익금을 관리경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증하는 등 사업비 편성·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익금과 지출 경비의 원가계산을 통해 수익금이 지출 경비보다 많을 경우 수익금 잔액에 대하여는 경산시로 세입 조치하거나 위탁료를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년과 ☆☆☆☆년의 경우 원가계산한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경산시 \$\$\$협회와 관리위탁 계약을

1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 제4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

하여 이용료 수익금과 관리경비의 편성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아래 [표 4], [표 5]와 같이 경산시 \$\$\$협회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달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수익금 차액분 전액<sup>13)</sup>을 관리수당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하였고, ☆☆☆☆년 ☆월부터 ☆☆☆☆년 ☆☆☆월까지는 관리자 2~3명에게 산출기초 또는 적정한 근거 없이 관리수당 70만원 ~ 4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수익금을 집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위탁 사업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표 3] 경산\$\$\$\$\$\$\$\$\$\$\$\$\$\$\$\$\$\$\$\$ 원가계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현황 “생략”

[표 4] 관리수당 지급 내역 “생략”

[표 5] 수익금 지출 잔액 전액 관리수당 지급 사례 “생략”

## 2. \$\$\$\$\$\$ 관리 재위탁 부적정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기준’에 따르면 아래 [표 6]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3) 매달 수익금 지출경비 잔액(50여만원 ~ 5백여만원)을 수익금 관리 수당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지급

[ 표 6 ]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자료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기준 발췌

그리고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법」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경산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sup>14)</sup>에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4)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6~9명 시장이 임명,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위탁관리를 재위탁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년, ☆☆☆☆년 재위탁 계약 시 아래 [표 7]과 같이 경산시 \$\$\$협회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경우 등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경산시의회의 동의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재위탁(재계약)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7] 경산☞☞☞☞☞☞ ☞☞☞☞ 재위탁 부적정 현황 “생략”

### 3. ☞☞☞☞ 사용·이용료 징수 등 관리 감독 소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관리 약정서」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경산시 \$\$\$협회는 테니스장 이용료를 이용자들로부터 아래 [표 8]과 같이 경산시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사용료)는 위 조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료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표 8] 경산☞☞☞☞☞☞ ☞☞☞☞ 사용·이용료 현황 “생략”

한편, 수탁자인 경산시 \$\$\$협회에서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과거부터 ☆☆☆☆년 ☆월<sup>15</sup>)까지 테니스장 사용료 등을 전화 및 방문으로 접수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장

수납 등을 통하여 징수하였다.

따라서 수탁자인 경산시 \$\$\$협회는 ☁☁☁☁ 위탁관리에 따른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등 수탁재산의 관리 상황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경산시에 보고하여야 했으며, 경산시 가과에서는 경산시\$\$\$협회의 사용료 적정 징수 여부 및 수탁재산 관리 상황 등 위탁재산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 위법 부당할 경우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용료 적정 징수 및 수탁재산 관리 상황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9]와 같이 수탁자가 경산시에 재위탁 시 제출한 월별 ☁☁☁ 사용·이용료 현황을 확인해본 바, 부적정하게 임의로 감면 징수하거나, ☁☁사용 면수 및 사용인원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없어 적정하게 사용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등 위탁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9] ☆☆☆☆년~☆☆☆☆년 경산☁☁☁☁☁☁ ☁☁☁☁ 사용·이용료 부적정 사례 “생략”**

그 결과 행정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5) 2023년 7월 이후에는 인터넷 예약으로 변경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 처리 대행 용역 계약 부적정 등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 ㉮㉮㉮ 처리를 위해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단가계약 등을 통해 아래 [표 1]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표 1] ㉮㉮㉮㉮ ㉮㉮㉮ 처리 대행 용역 계약 체결 현황 “생략”

#### 1. ☆☆☆☆년 ㉮㉮㉮㉮ ㉮㉮㉮ 처리 대행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 ㉸㉸㉸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제2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sup>16)</sup>은 [별표 1], 용역 분야별 평가 방법은 [별표 2]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낙찰자결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 처리 대행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할 때에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했고, 준법성 항목의 경우에는 부서에 사실조회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여야 했으며, 적격심사 결과가 부적합이면 후 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주)\$\$\$\$\$\$의 인력확보의 적정성 및 준법성 항목을 평가하면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인력 확보의 적정성 항목 5점, 준법성 항목 5점을 부여하여 총점 87.49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정당하게 적격심사<sup>17)</sup> 할 경우 인력확보의 적정성 항목에서 4점, 준법성 항목에서 3점이 부여되어 종합평점은 87.49점이 아닌 84.49점으로 적격심사 점수(8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 ☆. ☆☆.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 순위 입찰자들은 적격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 2] 적격심사 결과 “생략”**

16) I. 당해용역 수행능력(배점 60점), II. 경영상태(배점 10점), III. 입찰가격(배점 30점)

17) 「경상북도 ㉸㉸㉸㉸ ㉸㉸㉸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 적용

## 2. 수의계약 계약단가 산정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상대자를 우선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 ☆☆☆☆년에도 동일한 용역의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수의계약 금액을 기초금액 대비 87.92%, 87.78%로 산정<sup>18)</sup>하여 계약하였으나, ☆☆☆☆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동일하게 추진하는 용역인데도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수의계약 금액을 기초금액 대비 92.43%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수의계약 현황 “생략”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 처리 대행 용역이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에는 과도한 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도록 유사거래 실례가격 및 이전 계약과 비교 검토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했다.

18)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에 따르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공사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그 결과 ㉠㉠㉠㉠ ㉠㉠㉠ 처리 대행 용역에서 이전 기초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인 87.85%<sup>19)</sup>를 적용했다라면 ☆☆☆☆년 188,160,056원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병합), CCC(병합)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19) 87.85% = {87.92%(2022년 기초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 + 87.78%(2023년 기초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2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적정

경산시 가과에서는 오수처리를 위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생략”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부적정

「하수도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부터,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적합 통지를 한 1일 처리용량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적합 통지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최소 12일에서 최대 186일이 지나 검사하는 등 20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2]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 및 지연검사 현황 “생략”**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부적정**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하수도법」 제7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 지도·점검을 아래 [표 3]과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기준

(단위 : 회/년)

등 급	지 역		수변·특정 지역	기타지역
	우수관리	일반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2m <sup>3</sup> /일 초과, 단, 수변·특정 지역은 1m <sup>3</sup> /일 이상 등)	1. 처리용량 50m <sup>3</sup>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sup>3</sup> /일 미만		2	1
		1. 처리용량 50m <sup>3</sup>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sup>3</sup> /일 미만	1	1
		1. 처리용량 50m <sup>3</sup>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sup>3</sup> /일 미만	2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정화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인용 이상)			4 2	2 2
			1	1

\* 자료 : 「통합지도점검」 별표2 정기 지도·점검 기준 발체

따라서 경산시 가파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4]와 같이 ☆☆☆☆년부터 ☆☆☆☆년까지 점검율이 1.3 ~ 1.7% 밖에 안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생략”

또한 위 부서에서는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점검 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아래 [표 5]와 같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개소를 점검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 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 처리용량 50m<sup>3</sup>/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점검 미이행 “생략”

## 2. 특정토양오염도검사 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처분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sup>20)</sup>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 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

<p>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양오염도검사주기</p> <p>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p> <p>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p> <p>다. 생략</p> <p>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누출검사</p> <p>3. 생략</p>
------------------------------------------------------------------------------------------------------------------------------------------------------------------------------------------------------------------------------------------------------------------------------------------------------------------------------------

\*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발췌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그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3조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sup>21)</sup>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

20)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

21)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적기에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주기가 도래할 경우 연간 정기점검 시 검사주기 안내를 통해 대상시설 설치관리자가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검사주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아래 [표 7]과 같이 관리대상시설 2개소가 감사일 현재까지 누출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표 7] 누출검사 미이행 사업장 현황 “생략”

그 결과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의 위험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누출검사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2,000,000원)**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 CCC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다과
내 용	

경산시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부과·징수권자인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사업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등의 내용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기관(도 라과)에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경산시 가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관인 도 라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가과에서 완료한 '○○○○○○○○ 정비공사', 가과에서 시작해서 나과에서 완료한 '○○○○○○○○ 정비공사'와 다과에서 완료한 '○○○○○○○○ 정비공사'와 다과에서 완료한 '○○○○○○○○ 조성사업'의 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 사항을 도 라과로 통보하지 않아 90,915천 원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하였고,

[표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 승인 사항 미통보 현황 “생략”

경산시 가과에서 진행한 ‘○○○○○○○ 정비공사’와 ‘○○○○○○○○○ 정비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 ☆. ☆.과 ☆☆☆☆. ☆. ☆☆.에 사업승인 되어 국가 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57,154천 원 상당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게 하였다.

그 결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57,154천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한 “○○○○음 ○○○리 ○○○○○○○○ 및 ○○○○○ 조성사업”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사항을 도 라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병합), CCC(병합)는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 [표 1] 도시계획도로 사업 현황 “생략”

#### 1. 착공서류 검토 소홀 및 건설폐기물처리 배출자 신고 처리 부적정

##### 가. 착공서류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부서인 경산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개설공사’의 착공 내역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당초 발주설계서에 경비<sup>22)</sup>항목으로 반영된 시추조사비가 노무비와 재료비로 반영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비 9,551천 원(제경비포함)이 과다계상된 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감, 신규발생, 처리방법의 변경,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처리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22) 시추조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각각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주된 경비성 비용이 많아 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초 발주설계시 경비로 적용되어 있었으나 도급자 착공내역 작성시 노무비와 재료비로 변경하여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증가함.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기간 및 건설폐기물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및 변경신고서 제출 현황 “생략”

## 2.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은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등 품질관리비의 세부 산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개설공사’와 ‘○○○ ○○○○○○~○○○○○○○○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적용방법을 준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시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제4호의 안전관리비용(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공사 추진 일반 공종(순공사비)에 반영하여 낙찰률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가 과소계상되었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성 비용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임의 조정 금지 및 정산 의무 대상 비용인 안전관리비가 부적정하게 반영되었다.

**[표 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현황 “생략”**

또한 ‘○○○~○○○○ ○○○(○○○○-○○○○)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계상할 때 하위 항목인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하여 단가산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품질관리비 83,396천 원을 과다계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사업준공시 정산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사업비 과다지급의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과다·과소하게 계상된 **사업비(82,524,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 BBB, CCC는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등의 결정권자에 대한 사항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 및 제26조,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본 규칙의 일부개정[2019. 12. 27. (시행2020.1.1.)]된 사항을 보면, 규칙 제2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시설<sup>23)</sup>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

23) 다음 각 호의 시설 :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교 등), 체육시설(종합운동장 등), 문화시설(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발휘와 장래의 공간 수요 고려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중요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국토교통부령 제679호, 2019.12.27.일부개정[시행 2020.1.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한편, 경산시 가과에서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무와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무 등을 위임 받아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때에는 위 [표 1]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변경)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학교시설 변경(경미한 사항)으로 입안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업무를 추진 하면서, 함께 결정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및 고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발휘와 장래 공간 수요

고려를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결정 목적에 위반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변경) 되었다.

[표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적정/부적정 처리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 선형개량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 (주) 대표자 \$\$\$와 ☆☆☆☆. ☆☆. ☆☆. 공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표] 공사 현황 “생략”

#### 1.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미통보 및 협의내용 이행 부적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후, 그에 따른 협의결과를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만일 해당 개발사업이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협의기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공사 중 증가되는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하는 시설을 우선 시공하기 바람’이라는 협의 의견에 대하여, 재해저감대책으로 ‘개발 중·후 불투수층의 증가를 유발하여 개발 전에 비해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회에는 개발 중 임시침사지점 저류지 4개소, 가배수로 등을 저감대책으로 마련함’이라고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공문 [경산시 가과-\*\*\*\*호(☆☆☆☆.☆.☆☆.)]으로 나과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당초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반영된 공사 중 임시침사지점 저류지 4개소, 가배수로 설치와 개발 후 침투통 설치를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사업의 경우 경우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예방조치를 포함한 공사 중지 통보서를 협의기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저류지와 가배수로 설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재해영향 저감대책 미이행으로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등 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 2.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가. 간이 흙막이 가시설 시공방식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미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에 따라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9장제6절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산시 가과에서는 ‘㉠~㉠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하수관 부설 시 필요한 간이흙막이 가시설 설치 품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시에는 조절식 간이흙막이 품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상대적으로 시공단가가 저렴한 조절식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설계서 등 계약 서류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감액처리 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공단가가 저렴한 조립식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여 발생한 공사비 57,890천 원(제경비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 나. 비계다리 미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미흡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시스템비계’와 ‘비계다리(경사형 가설계단)’를 구분<sup>24</sup>하여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시스템비계 품에는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품셈의 주해를 보면 시스템비계 품의 ‘내부 계단’이란 비계 내부에서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가설계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비계다리(경사형 가설계단)’는 외부에서 비계로의 접근을 위한 계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설계 시 비계다리 품은 외부에서 비계에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계단이 필요할 시에 반영해야만 하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 비계다리를 미설치하였으면 미설치 물량에 대해 정산 처리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의 실시설계 시에 교량 고소작업을 위해 시스템비계와 비계다리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비계다리(183㎡)를 설치하지 않고 교량 시공을 완료하였고, 비계다리 미설치에 대한 공사비 30,056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4) (비계다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2009년부터 강관비계와 별도로 ‘강관비계다리’가 반영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가설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2년부터 경사형 가설계단 품으로 보완 반영, (시스템비계) 2016년부터 ‘시스템비계’ 품이 신설되었으며, 비계(발판 및 내부계단 포함) 설치,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재정행정의 건전성이 악화 되었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준공 후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87,947,660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 1.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 관련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건축물 등이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위반 내용을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년까지 총 6건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기재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서식 제29호의 법정 서식인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엑셀 파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

**[표 1]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미기재 등 현황 “생략”**

그 결과 위반건축물의 관리체계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을 초래하였다.

**2.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소홀 관련**

「건축법」 제79조 내지 제80조 및 「경산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동 \*\*\*-\*\*번지 \$\$\$ 외 18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 후 반복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현황 “생략”

그 결과 위반건축물이 장기간 존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적법한 건축행위자와의 형평성이 침해되어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물대장 내 위반사항 미기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미작성 및 **이행강제금 9,897,000원 채부과** 미시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 FFF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완료되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년 상·하반기, ‘☆☆년 상·하반기, ‘☆☆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제출 공문과 하자검사 대상 목록을 관련 부서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았으나, 별도의 하자검사 실시 요청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고, 이에 계약담당자의 명확한 요청 없이 소속 공무원들은 하자검사 결과 제출 공문을 사실상 하자검사 실시 요청으로 간주하여 자체 하자검사 계획 수립 후 실시함에 따라 하자검사 대상 중 1,518건은 하자검사 결과 제출 공문 통보일 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 하자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경산시 가과에서 송부한 하자검사 대상에는 최종검사 대상임이 표기되지 않아 소속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최종검사 완료 즉시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표] ☆☆☆☆년 ~ ☆☆☆☆년 하자 검사 현황 “생략”**

그 결과 하자검사를 실시한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효력이 없는 하자검사를 수행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기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하자검사 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을 추진중에 있다.

### [표 1] 공 사 현 황 “생략”

####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2] 실시계획 미인가 사업 추진현황 “생략”

그 결과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신된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sup>25)</sup>하지 않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3.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25)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 침사지 관리현황 기록 및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반영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0-1(손해배상금 등)<sup>26)</sup>에 따르면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한전주 이설에 따른 공사비 지급 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34,488,729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3]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내역 “생략”

####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4-0-1〔2011. 2. 1. 손해배상금 등〕)참조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이용요령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에서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사토량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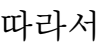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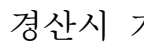
**[표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이행 사업 내역 “생략”**

그 결과 인근 지역 현장간에 적정한 토석 이동·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주청과 시공사 간의 토석수급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토석 운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 5.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에서는 ‘  도로확포장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의 적용절차를 준수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내역서 상 산출경비에 계상 처리 하였다.

그 결과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 6. 아스팔트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적정

「도로법」 제10조, 제31조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에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 보조기층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 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로 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용 유화아스팔트, 시공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위에는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부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택 코트용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시공에 필요한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에서는 ‘㉠~㉠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포장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유화아스팔트를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택 코트용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하여야 하는 시공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프라임 코트용 유화아스팔트 6,296㎡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아스팔트 시공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품질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631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이행하시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가가치세 34,488,729원을 환수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2,631,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관련자 AAA, BBB는 **혼계** 처분 하시고, CCC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구 경산시 나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 [표 1] 사업 현황 “생략”

####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sup>3</sup>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이용요령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시 공사착수 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현황을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공사의 사토·순성토량이 2,595㎥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입력 대상임에도 토석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근 지역 현장간에 적정한 토석 이동·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주청과 시공사 간의 토석수급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토석 운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비율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2017. 9. 27.)」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을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의무사용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했으며, 농어촌도로에서 포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순환골재 등을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의무사용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에 2천 제곱미터 이상<sup>27)</sup>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각각 소요량의 40% 이상 사용하여야 함에도 순환골재 (보조기층)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심의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3,355천 원(관급자재대)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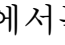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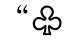
### 3.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

27) 절삭 후 덧씌우기 물량 A=13,676㎡

작성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의 적용절차를 준수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내역서 상 산출경비에 계상 하였다.

그 결과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하였다.

#### 4.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 발생한 사토 운반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비 5,359천 원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 2]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현황 “생략”

그 결과 공사원가 등이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는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 ❀❀❀❀❀(❀❀ ❀❀❀❀❀)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를 추진하였다.

[표 1] 공 사 현 황 “생략”

### 1. 신기술·특허공법 협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1관-2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타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공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2관-가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2관-가에 따라 법적 권리 확보 및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공사 설계에 반영 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설계에 반영 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기술·특허공법 도입의 취지가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적 권리  
약화 및 계약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신기술·특허공법 설계 반영 부적정

☞☞ ☞☞☞☞☞☞☞☞☞☞ 실시설계용역 ☞☞☞ 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경산시 공고 제☆☆☆☆-\*\*\*\*호) 1-라에 따르면 공법 제안 규모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하고 있고, 해당 공법 제안 규모에 따라 공법 제안사를  
선정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2절-제2관-나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 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  
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표 2]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생략”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2관-나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설계에 반영 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  
☞☞☞☞☞☞☞☞☞☞ 실시설계용역 ☞☞☞ 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경산시 공고 제☆☆☆☆-\*\*\*\*호) 1-마-3)에서 확정된 제안 규모를 고려하여  
공법 선정, 설계 반영 등을 했어야만 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산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및 ☁☁☁☁☁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을 추진하고 있다.

### [표 1] 공 사 현 황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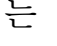
#### 1. 가설흙막이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34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공사 내용 중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설흙막이 반영하여야 하고, 가설흙막이 설치시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경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림]과 같이 가설흙막이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였는데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수의 구간에서 좌우 흙막이 판을 이어주는 버팀대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로 시공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림]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사진 “생략”

그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재해의 위험속에서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반복될 경우 잔여 공사구간에서 근로자의 부상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2. 시공상세도 미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비계·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가도 등의 설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배수관·암거·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철근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작성 비용에 대하여 실정보고에 따른 감액 등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및 ☞☞☞☞☞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 902장 및 보통 100장에 대하여 153,558천원(제경비 포함)을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작성은 단순 434장만을 작성하여 미작성분 90,498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예정일(☆☆☆☆. ☆. ☆.)까지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감액 및 실정보고<sup>28)</sup>등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 기간 중(2025. 9. 1.~ 9. 19.)에 공사 중지(☆☆☆☆. ☆. ☆.)를 하여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관련 설계변경을 시행함으로써,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90,498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없이 준공 처리할 상황을 유발하였다.

### 3. 교통신호수 노임 전용 지급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9절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직접노무비<sup>29)</sup>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가과에서는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할 때에 교통신호수의 노임을 안전관리비 또는 직접노무비 중 어디에 포함할지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실제 지급 시 이중 정산되지 않도록 노무비와 안전관리비 정산서의 상호 대조 등을 통하여 중복 또는 전용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만 했다.

2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정의) 제23호 규정에 따라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함

29) 건설공사,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고용하여 계약이행 현장에 실제 투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교통신호수의 노임이 직접노무비 직불금 내역으로 전용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법령상 절차로 인한 하수도사업의 정당성 훼손, 행정통제 및 재정집행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검토 부족으로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설흙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90,498,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